

	<h2>성적처리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3-08
		제정일자	2010. 9. 1.
		개정일자	2026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1조(성적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6.12.1.)

제2조(성적평가)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결상황(20%)과 중간고사, 기말고사, 과제물을 합친 성적(80%) 비율로 종합 평가한다. (개정 2016.12.1.)

② 출결상황(20%)을 제외한 성적(80%) 비율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에 따라 해당 교과목 교수가 조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6.12.1., 2017.9.1.)

③ 채플 I, II, 효충인성교육, 사회봉사 등 이수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/NP로 평가한다. (신설 2016.12.1.)

④ 조기 취업자의 경우 조기취업자학사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. (신설 2016.12.1.)

⑤ 기타 특별한 경우 총장의 인정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 (신설 2016.12.1.)

제3조(성적평가단위) ① 성적평가는 교과목 또는 수강반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삭제 <2016.12.1.>

③ 삭제 <2016.12.1.>

④ 수강포기를 한 학생도 성적 산출시 전체 인원내 포함한다.

⑤ 평점평균은 다음의 식으로 산출하되,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. (신설 2016.12.1.)

$$\text{평점평균} = \frac{(\text{교과목 학점수} \times \text{평점})\text{의 합계}}{\text{수강 총 학점수}}$$

⑥ 성적평가는 학칙 제41조 제1항의 평점평균으로 하되,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등급으로 표시한다. (신설 2016.12.1.)

⑦ 성적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. (신설 2016.12.1.)

$$\text{평균평점} \rightarrow \text{평점계} \rightarrow \text{백분율 평균점수} \rightarrow \text{백분율 성적합계} \rightarrow \text{성적 취득학점} \rightarrow \text{연소자}$$

제4조(성적평가비율) ① 모든 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6.12.1., 2024.3.1.)

1. 일반과정 성적평가 비율

등급	성적	평점	누적평가 비율
A+	100-95	4.5	40% 이내
A0	94-90	4.0	
B+	89-85	3.5	100% 이내
B0	84-80	3.0	
C+	79-75	2.5	
C0	74-70	2.0	
D+	69-65	1.5	
D0	64-60	1.0	
F	59점 이하	0	

2. 산업체위탁과정, 전공심화과정 성적평가 비율

등급	성적	평점	누적평가 비율
A+	100-95	4.5	50% 이내
A0	94-90	4.0	
B+	89-85	3.5	100% 이내
B0	84-80	3.0	
C+	79-75	2.5	
C0	74-70	2.0	
D+	69-65	1.5	
D0	64-60	1.0	
F	59점 이하	0	

제5조(상대평가 예외적용)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또는 교수 재량 평가를 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2.1. 2024.3.1., 2025.11.1.,2026.3.1.)

1. 교직교과목
2. 전공교과목 이수 평균B학점 이상 취득시 국가시험 등 응시자격이 생기는 교과목
3.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
4. 교과목 중 P/N으로 이수가 결정 되는 교과목
5. 교과목의 성격상 상대평가가 어려운 교과목(캡스톤디자인, 졸업작품, 융합교과목)
6. 상대평가 대상 인원이 5명 미만인 교과목

② 삭제 <2016.12.1.>

③ 삭제 <2024.3.1.>

④ 삭제 <2016.12.1.>

⑤ 그 밖의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하며, 별도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6.12.1.)

제6조(성적의 공시 및 이의신청) ① 성적은 학기말 시험의 최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학생들에게 3일 이상의 열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 (개정 2016.12.1.)

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정정기간 내에 해당학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,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정정할 수 있다. 단, 기일 경과 시에는 정정할 수 없다. (신설 2016.12.1.)

③ 담당교수가 입력한 성적이 착오로 인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정정원 및 증빙자료를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에 파일 첨부하고 학과장은 학과 회의를 거쳐 정정사유를 확인한 다음 교무학생처로 제출하며, 교무학생처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6.12.1.) (개정 2017.9.1., 2019.8.1.)

④ 성적평가 및 출석부 등 성적산출자료는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. (신설 2016.12.1.) (개정 2025.11.1.)

[제목개정 2017.9.1.]

⑤ 계절학기에 관한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25.11.1.)

제7조(성적보고 시한) ① 삭제 <2016.12.1.>

② 학과소속 외래강사 담당과목의 성적입력 및 정정은 소속학과 학과장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10.6., 2016.12.1.)

③ 삭제 <2016.12.1.>

④ 학기말 고사 후 성적입력기일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, 출석 성적의 경우 출석조건표에 의하여 자동 산출된 전산 출결 결과

를 확인한 후 최종 성적을 확인한다. (신설 2017.9.1.) (개정 2025.11.1.)

⑤ 합리적인 성적부여를 위해 전체교수는 직접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학기말에 교무학생처에 제출한다. (신설 2017.9.1.) (개정 2019.8.1.)

제8조(시험)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서 해당 교과목 교수가 수업시간에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그 성적은 학기말 종합성적에 반영한다.

② 시험문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주·객관식을 병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출제한다.

[본조신설 2016.12.1.] (개정 2019.8.1., 2020.3.1. 2025.11.1.)

제9조(시험불참자의 성적처리) ① 학칙 제39조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신병으로 인하여 시험에 불참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.

② 해당 교과목 교수는 시험 불참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대휴학자의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/4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평가 후 입대한 경우에는 입대 전 성적을 기말성적으로 담당교수가 이를 평가하며, 이 경우 의무복무로 인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일반 휴학자에게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 단, 복학 시 본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인정한 성적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하여야 한다.

④ 시험불참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, 추가시험에 미응시 또는 미제출 한 학생의 성적은 0점으로 한다.

⑤ 시험불참자가 제2항에 의하여 추가시험을 치를 경우,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⁰ 까지 인정한다.

[본조신설 2016.12.1.]

제10조(개정) 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,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 공고하여 대학의 교원 및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② 제출된 의견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[본조신설 2017.9.1.]

제11조(위원회 설치) 성적평가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3.1]

부 칙

이 성적처리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